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 여성 이사 비율 확대〉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91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합의 여성 이사 비율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0. 24.
3. 회 부 일 : 2025. 10.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Ⅲ. 검토의견

1. 조합의 여성 이사 비율 확대

개정안은 지역농협(준용규정¹⁾)에 따라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진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생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u>	⑧ ----- ----- ----- ----- ----- 다만, 재임 중인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의 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45조²⁾는 조합에 대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이사 정수의 20%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면서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경우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중 1명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5년 10월 말 기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조합 841개소 중 현행 규정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출한 조합은 804개소(95.6%)로 나타남.

그런데 최근 5년 전체 조합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기간 여성 임원의 비율은 10% 이하에 불과하여 현행 규정으로는 여성조합원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년 여성 조합원 비율 】

구분	여성 조합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2020년	33% (688,298/2,085,234명)	8.5% (1,137/13,345명)
2021년	33.5% (698,510/2,087,360명)	9.0% (1,208/13,416명)

- 1)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후 략>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 략>
-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구분	여성 조합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2022년	34% (705,682/2,076,055명)	9.6% (1,270/13,236명)
2023년	34.5% (712,780/2,063,765명)	10.0% (1,311/13,096명)
2024년	35.1% (717,211/2,046,229명)	10.0% (1,341/13,432명)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에 개정안과 같이 여성 이사 참여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보장할 경우 조합의 경영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의견 반영 및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여성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조합 내 특정 성별 조합원의 비중과 관계없이 특정 성별의 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특정 성별을 과다대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여성조합원 비중이 30% 미만인 조합에 대하여 여성 이사를 30% 이상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오히려 남성조합원에 대한 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음.

조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조합원의 평균 비율이 36.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역축협, 품목조합의 여성 조합원의 평균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합 유형별 여성 조합원 비율('24년 말 기준) 】

구분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여성조합원 비율	36.9%	17.1%	15.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개별 조합별로는 여성조합원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인 조합은 지역농협 92.2%, 지역축협 6%, 품목조합 10.1%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조합원 비율 30% 이상 조합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조합(A)	여성조합원 비율 30% 이상 조합(B)	(B/A)
지역농협	915	844	92.2%
지역축협	116	7	6%
품목조합	79	8	10.1%
계	1,110	859	77.4%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

따라서 조합 이사 선출 시 특정 성별 비율의 상한을 모든 조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행 규정과 같이 특정 성별 비중이 30% 이상인 조합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입후보자 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여성 이사를 30% 이상 선출하지 못하는 조합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조합 이사회는 임명·위촉이 아닌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

반적인 이사 선임 절차에 따른 경우 특정 성별 이사 비율의 상한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여성 이사 의무도입 대상 조합의 경우 여성이사 1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운영방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조합원들이 출자금 규모나 배당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³⁾ 임원의 결격사유⁴⁾에 해당하는 경우 입후보 가능한 여성조합원수의 제한으로 여성 이사 후보자 수가 전체 이사 수의 30% 이하에 그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특정 성별의 이사 후보자 수가 조합 이사수의 30%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불가피한 법률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행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성 이사 적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은 여성 이사를 종전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3)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데...지역농협 76%, 여성이사 '1명 이하」, 2025.09.18., 경향신문

4)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선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여성 이사 후보자 수가 조합 이사 수의 30%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입후보 자체가 사실상 이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만으로는 여성조합원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 후보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일정한 경과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선거에서는 이사 정수의 80%를 적용하고, 이후 선거부터는 70%를 적용하는 등 여성이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한편,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하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최근 법률 개정⁵⁾(2025.12.17. 시행 예정)을 통해 여성 이사 의무 도입 기준을 종전 30%에서 20%로 조정함으로써 여성 이사 수의 점진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시행 초기 조합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제도의 안정적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⑧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12. 17.]

정착과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 이사 적용 비율을 즉시 상향하기보다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